
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박정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2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9.

발 의 자 : 박정현 · 박균택 · 문진석
모경중 · 서미화 · 이주희
박민규 · 황명선 · 이학영
박홍배 · 이광희 · 이강일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로, 자전거 주차장,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·보관·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.

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 권한이 없는 구역에 방치된 자전거는 현행법상 처분이 곤란하며, 무단으로 방치하는 요건 이외에도 통행을 방해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어 처분 요건이 다소 까다로움.

이에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장소에 ‘조례로 정하는 장소’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·처분 권한을 확대·부여하며, 처분 요건 중 ‘통행 방해’ 요건을 삭제하고,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제2항 신설 등).
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자전거 주차장, 그 밖의 공공장소”를 “자전거 주차장,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공공장소”로, “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”을 “방치하여서는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- ②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) ① 누구든지 도로, <u>자전거 주차장, 그 밖의 공공장소에</u> 자전거를 무단으로 <u>방치하여</u>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. ② (생략)	제20조(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) ① ----- <u>자전거 주차장,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공공장소</u> ----- <u>방치하여서는</u>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제25조(과태료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5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	②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<u>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u> ③ 제1항 및 제2항----- ----- ----- -----.